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진실화해위원장 추가〉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359호, 제2206360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7
※ 참고자료	11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한병도 · 위성곤 · 신정훈 · 박정현 · 이해식 · 모경중
이상식 · 양부남 · 김성환 · 강선우 · 이광희 · 채현일
윤건영 · 김성희 · 김영환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 의안번호 : 635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한병도 · 위성곤 · 신정훈 · 박정현 · 이해식 · 모경종
이상식 · 양부남 · 김성환 · 강선우 · 이광희 · 채현일
윤건영 · 김성희 · 김영환 · 이기현 의원(16인)
 - 2) 제 안 일 : 2024. 12. 10.
 - 3) 회 부 일 : 2024. 12. 11.
- ※ 의안번호 : 636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1. ----- ----- ----- ----- ----- <u>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 --- ----- ----- -----

현행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생략)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u> <u>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 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 국가인권위원회 : 독립기구 기관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¹⁾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로서, 사건에 대한 진실규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 까지 약 4년간 활동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고, 이후 짧은 활동 기간으로 피해자 상당수에 대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2020년 6월 동 법 개정을 통해 같은 해 12월 재출범함.

명 및 조사,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함.

[표-3] 진실화해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8인(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 - 대통령 지명 1인 ◦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1인,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1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
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자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장관급²⁾)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연임 가능),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³⁾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위원장은 장관급임.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의 추가할지는 동 위원회의 성격 및 지위, 위원장의 위상 및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⁴⁾ 다음의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조사활동 종료가 예정⁵⁾된 한시적인 조사기구이며 현 위원장이 2024년 12월 6일에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의 결원, 동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재출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⁶⁾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4)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5)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은 2021년 5월 27일이었으나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5년 5월 26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만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6)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50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